



# 서울고등법원

## 제 8 - 3 행정부

### 판 결

사 건 2020누582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전민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윤승환

피고, 피항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대표자 위원장 강상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제 1 심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 선고 2019구합7096 판결  
 변론 종결 2021. 5. 7.  
 판결선 고 2021. 5. 28.

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원고가 제기한 2019. 3. 22. 민원제기에 대한 피고의 2019. 7. 2. 권고결정 및 원고의 2019. 7. 18. 재심의신청에 관한 피고의 2019. 8. 23.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2019. 7. 18. 재심의 신청에 관한 피고의 2019. 8. 23.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20. 10. 7.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및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가 제기한 2019. 3. 22. 민원제기에 대한 피고의 2019. 7. 2. 권고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는바,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이 유

### 1.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방송이 심의규정의 여러 조항들을 위반하였음에도, 피고가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제27조 제5호만을 적용하여 권고를 의결하고 재심의 요청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회신을 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재심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저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나. 2)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수신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 건국업적 등을 소개하며 각종 강좌를 기획하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라는 시민단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방송으로 위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던 강좌가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회원들이 탈퇴하였으며, 위 시민단체 관련 전단지 등을 돌릴 때 시민들이 외면하는 등으로, 사업 및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신으로 그 근거 법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원고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로부터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가 든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거나 본안 판단에 관한 것으로,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원고가 한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고'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의 경우' 해당 사건의 원고 자신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고가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해당 블로그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한 게시 글 삭제 시정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피고가 한 조치의 법적 근거나 내용, 성격, 원고의 지위 등이 이 사건 회신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의 경우, 방송 채널사업자인 원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한 제재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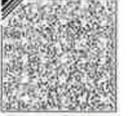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2019. 7. 18. 재심의신청에 관한 피고의 2019. 8. 23.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대법원 판결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11항,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잠수기어업을 어선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잠수기어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신청인의 신청권을 침해하거나 신청의 실체에 관하여 적법 여부의 판단이 내려져 신청인으로서의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기가 의도한 처분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끼치는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sup>12)</sup>

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0누9428 판결



재판장	판사	김제욱	<u>김 제 욱</u>	
	판사	이완희	<u>이 완 희</u>	
	판사	신중오	<u>신 중 오</u>	
		신중오	신 중 오	





# 정본입니다.

2021. 5. 28.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정종섭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 (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 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 (서울고등법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03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